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사건 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2013 헌가 5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2014 헌가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2012 헌가 17;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2013 헌가 23; 울산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2013 헌가 27; 수원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2013 헌가 13

의견 제출자의견 제출자로 국제앰네스티, 웨이커고 세계자문위원회, 국제 법률가 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2014년 8월 30일

서론

1. 국제앰네스티, 웨이커고 세계자문위원회, 국제 법률가 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의견 제출자들”)¹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적 지역적 인권법 및 기준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이와 관계된 법과 관행을 인지하고 있습니다.²
2. 의견 제출자들은 헌법재판소가 2007 헌가 12 등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2008 헌가 22등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을 고려한 이후 현 사건을 다루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련해 국제법 및 판례, 다른 국가 판례를 참고해 발전시키길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합니다. 특히 2011년부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는 500명이 넘는 개인청원 사례를 다루고 있는 세가지 사건에 대한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총 488건의 개인청원 중, 두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제16항 참고)³ 유럽인권재판소의 대재판부(Grand Chamber)

¹ ‘의견 제출자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록 1참고.

² 2010년 11월,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2007 헌가 12 등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5조 제 8항 위헌제청, 2008 헌가 22등 병역법 제 88조 제 1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이었으며, 2011년 8월 30일에 법원 판결이 났다. 국제앰네스티 법률의견서, 2007 헌가 12 등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5조 제 8항 위헌제청, 2008 헌가 22등 병역법 제 88조 제 1항 제1호 위헌제청(AI Index ASA 25/003/2010). 2010년 11월, 참조.

³ 2006년 11월부터 자유권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개인통보 5건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으며, 이 중 4건이 대한민국과 관계된 것이다: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 2006년 11월 3일 견해 발표(개인통보 1321/2004, 1322/2004), UN Doc. CCPR/C/88/1321-1322/2004;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통주 대 대한민국, 2010년 3월 23일(개인통보 1593 1603/2007)에 견해 발표, UN

에서 *바이탄(Bayatyan) 대 아르메니아 사건* 판결을 발표했습니다(제23항 참고).⁴

의견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

3. 본 의견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서는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기구인 자유권 위원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 이하 자유권규약)⁵ 제 18조에 의거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의 권위 있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 당사국입니다.⁶ 또한 본 의견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 지역기구의 해석을 참고하고 있습니다.⁷ 그리고 또한 본 의견서는 병역의 의무를 시행하고 있는 당사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과 관행을 개괄하고 있습니다.

4. 본 의견서는 한국 법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닌,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법규의 국내법 적용 원칙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당사국⁸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에 부합하며,⁹ 자유권규약을 포함해 당사국에 해당하는 국제조약을 당사국의 당국 및 재판소는 선의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와 더불어, 자유권규약 제 2조에 의거해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을 존중하고 모든 영역에서 자유권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차별 없이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¹⁰ 이러한 책

Doc. CCPR/C/98/D/1593-1603/2007;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2011년 3월 24일 견해 발표(개인통보 1642-1741/2007), UN Doc. CCPR/C/101/D/1642-1741/2007; *Cenk Atasoy and Arda Sarkut v. Turkey*, 2012년 3월 29일 견해 채택(개인통보 1853/2008 and 1854/2008), UN Doc. CCPR/C/104/D/1853-1854/2008;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2012년 10월 25일 견해 채택(개인통보 1786/2008), UN Doc. CCPR/C/106/D/1786/2008.

⁴ *바이탄 대 아르메니아 사건*(신청번호 23459/03), 항소심재판부 판결 2011년 7월,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105611>

⁵ 자유권규약, 99 UNTS 171, 1966년 12월 16일 채택되었으며, 1976년 3월 23일 발효되었다.

⁶ 대한민국은 1990년 4월 10일 자유권규약에 가입했다.

⁷ 국제사법재판소는 명확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판례법에 명시되어 있듯, 위원회가 채택한 자유권규약의 해석의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개인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와 일본 논평을 통해 확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소가 명시하는 명확성의 필요, 필수적인 국제법적 일관성 및 법적 보안은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과 조약을 이행하는 당사국 사이에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비슷하게 재판소는 인권보호를 위해 지역적 기구를 적용 시에는, 특별히 조약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기구가 채택한 지역적 기구의 해석에 큰 비중으로 두어야 한다. 기니 대 콩고민주공화국, 국제사법재판소(2010), 66(7), <http://www.icj-cij.org/doCKET/files/103/16244.pdf>.

⁸ 대한민국은 1977년 4월 27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비준했다.

⁹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155 UNTS 331, 은 1969년 5월 23일에 채택되었으며 1980년 1월 27일에 발효되었다.

¹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에는 “발효된 모든 조약은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반드시 선의로 이를 행사해야 한다. 제27조는 “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무는 당사국 전체에 구속력을 가지며 이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정부부처를 포함합니다.¹¹

5.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당 조항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의 관련 조항이 일반적으로 한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특히 국제인권조약의 조항과 부합하도록 해석하고 있다는 추론이 성립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법원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판결해왔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몇몇 사건에 있어 자유권규약에서 국가의 의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개요

6. 의견 제출자들은 아래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메커니즘의 의견 및 판례와 일치하여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 신념에 반대되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특별한 방안 (special accommodation)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누릴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며 국제인권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7.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기반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해왔습니다. 자유권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두 가지 요소, 즉 확신 또는 신념을 지킬 권리와 선교, 의식, 예배, 행사에서 신념이나 종교를 표명할 자유를 포함합니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와 제20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8. 자유권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된 개인청원에 대한 가장 최근 견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양심 또는 종교에 따라 병역의 의무 거부를 억압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과 부합하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개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선고를 내리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¹² 실제로 이번 개인청원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견해는 이전 대한민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된 매우 유사한 세 사건에서도 표명했던 견해를 되풀이했습니다;¹³ 개인청원 총 네 건에 대한 자유권 위원회의 견해는

¹¹ 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 조약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의 성질, UN Doc. CCPR/C/21/Rev.1/Add.13, 2004년 3월 29일, para 4,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CCPR/C/%2021/Rev.1/Add.13

¹² 김중남 등 대 대한민국, 2012년 10월 25일 견해 발표(개인통보 1786/2008), Doc. CCPR/C/106/D/1786/2008, para 7.5

¹³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2011년 3월 24일 견해 채택(개인통보 1642 1741/2007), UN Doc. CCPR/C/101/D/1642-1741/2007 para 7.4;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 대 대한민국, 2010년 3월 23일(개인통보 1593 1603/2007)에 견해 발표, UN Doc. CCPR/C/98/D/1593-1603/2007, para 7.4;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 2006년 11월 3일 견해 채택(개인통보 Nos. 1321/2004 and 1322/2004), UN Doc. CCPR/C/88/1321-1322/2004, para 8.3, para 8.4, para 9.

청원을 제출한 개인의 환경보다는 관련 법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이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한 것은 특정 사건의 개인이 처한 환경이라기 보다 법과 법 이행 또는 해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9. 마찬가지로 다른 국제인권기구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최근 결의안(제19항 참고)¹⁴과 1989년부터 반복적으로 채택된 옛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결의안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자유권규약 제18조를 기반으로 하는 사상과 양심,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해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위임한 특별 절차 역시 이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¹⁵ 종교나 신앙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정부들에 법과 관행에서¹⁶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개인 사례를 채택해왔습니다.¹⁷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이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¹⁸

10. 지역적 기준에서 보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¹⁹ 및 청년의 권리에 대한 이베로-아메리칸 협약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²⁰ 유럽인권재판소의 대재판부에서도 사상과 양심,

¹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24/17 (A/HRC/24/17), 2013년 9월 27일 표결 없이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은 위원회 당사국이다.

¹⁵ 자유권위원회 결의안 1989/59, 1993/84, 1995/83, 1998/77, 2002/45, 및 2004/35 이 표결 없이 채택되었다(유엔총회는 2006년 6월 16일 옛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2006년 6월 16일 인권이사회(A/RES/60/251)를 설립했다).

¹⁶ 예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 종교나 신앙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참조, UN Doc. A/HRC/10/8/Add.4, 2009년 1월 12일, para 68,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10session/reports.htm>;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파라과이 보고서, UN Doc. A/19/60/Add.1, 2012년 1월 26일, para 64(g),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2/102/44/PDF/G1210244.pdf?OpenElement>.

¹⁷ 해당 정부에 사건 요약서를 송부하고 답변을 받은 경우, UN Doc. A/HRC/16/53/Add.1, 14 2011년 2월 14일, paras 384-91 (투르크메니스탄); 해당 정부에 사건 요약서를 송부하고 답변을 받은 경우 UN Doc. A/HRC/7/10/Add.1, 2008년 2월 28일, paras 93-5 (에리트레아); paras 148-54 (리비아로 피난간 에리트레아인), paras 250-4 (투르크메니스탄); 해당 정부에 사건 요약서를 송부하고 답변을 받은 경우 UN Doc. E/CN.4/2006/5/Add.1, 2006년 3월 27일, paras 3-11 (아르메니아), paras 12-26 (아제르바이잔), paras 136-9 (그리스), paras 292-305 (대한민국), paras 355-64 (터키), paras 380-9 (투르크메니스탄). 보고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ohchr.org/EN/Issues/FreedomReligion/Pages/Annual.aspx>.

¹⁸ 의견 8/2008 (콜롬비아) 2008년 5월 8일 채택, 의견 16/2008 (터키) 2008년 5월 9일 채택,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채택한 문서, UN Doc. A/HRC/10/21/Add.1, pp.110-14 및 pp.139-47, 각각;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10session/reports.htm>; 또한 실무그룹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 가능 <http://www.unwgadatabase.org/un>.

¹⁹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010, O.J. (C83) 389, 2010년 3월 30일, 유럽공동체 공식 저널 출판, 2000년 12월 18일;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헌장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²⁰ 2005년 10월 스페인 살라망카에서 열린 이베로-아메리칸 당사국 회담에서 청년의 권리에 대한 이베로-아메리칸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2008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인권보호조약 제9조에 의거해²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²²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30여년 후 2000년에 채택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과는 달리 1966년 자유권규약이 채택되었을 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993년 자유권 위원회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일반 논평 제22호를 채택하였으며,²³ 아래와 같이 명시했습니다.

“본 규약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권리가 제18조에서 파생될 수 있으며, 살상력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 종교와 신앙을 표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²⁴

또한 “점차 많은 국가들이 군복무 수행을 금하는 종교나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강제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²⁵고 밝혔습니다.

12. 자유권규약의 18조에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종교나 신념을 가질 자유에 대한 어떤 제약도 허락하지 않는다(제18조 제2항). 제18조 제3항은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자유권 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말하는 “신념”과 “종교”는 폭넓게 해석이 되어야 하며 유신

²¹ 1950년 11월 4일 유럽인권보호조약이 조인됐고 1953년 9월 3일 발효되었다.

²² *바이탄 대 아르메니아* (신청번호 23459/03), 2011년 7월 7일 항소심재판부 판결, para. 110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105611>, *Erçep v. Turkey* (신청번호 43965/04), 2011년 11월 22일 판결 (프랑스어만 가능),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107532>; *Savda v. Turkey* (신청번호 42730/05), 2012년 6월 12일 판결 (프랑스어만 가능),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111414>; *Tarhan v. Turkey* (신청번호 9078/06) 2012년 7월 17일 (프랑스어만 가능),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112199>; *Buldu and Others v. Turkey* (신청번호 14017/08), 2014년 6월 3일 판결 (프랑스어만 가능),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144352>.

²³ 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 제 22호: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18조), UN Doc. CCPR/C/21/Rev.1/Add.4, 1993년 7월 30일,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CCPR/C/21/Rev.1/Add.4. 위원회는 일반 논평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²⁴ 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 제 22호: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18조), UN Doc. CCPR/C/21/Rev.1/Add.4, 1993년 7월 30일, para. 11.

²⁵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22호: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18조), UN Doc. CCPR/C/21/Rev.1/Add.4, 1993년 7월 30일, para. 11.

론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무신론적 신념, 전통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종교나 신념을 신봉하지 않을 권리만이 아니라 어떠한 종교나 고백하지 않을 권리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²⁶ 자유권 위원회는 신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예측할 수 있는 특정 필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²⁷ 더 나아가서 설사 “국가안보”처럼 자유권규약상의 다른 조항의 권리들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는 근거라 하더라도, 제18조 제3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근거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²⁸

14. 자유권 위원회는 1993년 일반논평 제22호 채택하고, 자유권규약 실행에 대한 당사국 보고서를 검토 하면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최종견해에 따라 1991년 시작된 절차를 활용하여 여러 차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례를 다루었습니다.²⁹ 어떤 경우에는 제18조만 근거로 했고, 다른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6조 (차별금지)나 다른 조항들도 함께 근거로 삼았습니다. 국가들의 자유권규약실행을 위한 최종견해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법규를 채택하고, 일정 수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이고 불충분한 법규를 해결하라는 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군복무에서 면제되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규약의 제18조와 일치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권 위원회는 제18조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일반 논평 제22호(1993)의 제11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³⁰

15. 자유권 위원회는 2004년에 이르러서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법률조항이 없는 국가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로부터 개인청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유권 위원회가 자유권규약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특정해 다룬 최초의 개인사례였습니다. 2006년 11월,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에 대한 견해를 채택하면서³¹ 위원회는 기존 판례법과 강제노동 조항(자유권규약 제8조)의 관련성을 검토했습니다.³² 자유권 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양

²⁶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22호: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18조), UN Doc. CCPR/C/21/Rev.1/Add.4, 1993년 7월 30일, para. 2.

²⁷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22호: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18조), UN Doc. CCPR/C/21/Rev.1/Add.4, 1993년 7월 30일, para. 8.

²⁸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22호: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18조), UN Doc. CCPR/C/21/Rev.1/Add.4, 1993년 7월 30일, para. 8.

²⁹ 본래 자유권 위원회 각 국가 보고서에 개인 의견을 표명했으나, 1991년에 위원회 전체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최종 의견서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³⁰ 자유권 위원회, 자유권규약 제40조에 따라 제출한 국가의 보고서, 최종의견서: 대한민국, 2006년 11월 26일, UN Doc. CCPR/C/KOR/CO/3, para. 17.

³¹ *윤여범, 최명진 v 대한민국* (개인통보 1321/2004 및 1322/2004), 2006년 11월3일 위원회의 견해 채택, UN Doc. CCPR/C/88/1321-1322/2004.

³² 1987년 자유권 위원회는 강제 노동조항과 관련된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참고한 것을

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도 배제하지도 않으며, 본 요청은 규약 제18조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하며, 그 해석은 규약 상의 다른 보장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문안과 목적을 고려하여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며,³³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제18조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신념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유죄 선고는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어떠한 제한을 통해서도 권리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규약의 제18조 제3항의 의미 안에서 제한이 필요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해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³⁴

16. 자유권 위원회는 이후에 진행된 병역거부 개인청원 세 건에서 자유권규약 18조 위반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그 추론에 있어서 다른 점을 강조했습니다.³⁵ 2011년 *정민규 외 v 대한민국* 사건에서 자유권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내재되어 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병에 대해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권리는 강요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³⁶ 이 접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어떤 제한도 자유권규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 정당한 제한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17. 자유권 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다수가 이 사건들이 규약의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동시에 위원회의 이전 논증과 같은 근거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³⁷ 특히 한 위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두 가지 요소, 즉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양심의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는 신념과 군대에 가는

밝히며 채택할 수 없는 첫 번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을 발표했다. (*L.T.K. v. 핀란드*, 1985년 7월 9일 채택한 판결 (개인통보185/1984), UN Doc. CCPR/C/OP/2).

³³ *윤여범, 최명진 v 한국정부* (개인통보 1321/2004 및 1322/2004), 2006년 11월3일 위원회의 견해 채택, para. 8.2.

³⁴ *윤여범, 최명진 v 한국정부* (개인통보 1321/2004 및 1322/2004), 2006년 11월3일 위원회의 견해 채택, paras 8.3, 8.4 및 9. 위원회는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 v 대한민국* (개인통보 Nos. 1593-1603/2007)에 대한 사건에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2010년 3월 23일 자유권 위원회의 견해 채택, UN Doc. CCPR/C/98/D/1593-1603/2007.

³⁵ *정민규 외. v. 대한민국*, 2011년 3월24일 위원회의 견해 채택 (개인통보 1642-1741/2007), UN Doc. CCPR/C/101/D/1642-1741/2007; *Cenk Atasoy and Arda Sarkut v. Turkey*, 2012년 3월29일 위원회의 견해채택 (개인통보 Nos. 1853/2008 and 1854/2008), UN Doc. CCPR/C/104/D/1853-1854/2008; *김종남 외. v. 대한민국*, 2012년 10월 25일 위원회의 견해 채택 (개인통보 No. 1786/2008), UN Doc. CCPR/C/106/D/1786/2008.

³⁶ *정민규 외. v. 대한민국*, 2011년 3월24일 위원회의 견해 채택 (개인통보 1642-1741/2007), para. 7.3.

³⁷ *정민규 외. v. 대한민국*, 2011년 3월24일 위원회의 견해 채택 (개인통보 1642-1741/2007), Mr Yuji Iwasawa, Mr Gerald L. Neuman, 및 Mr Michael O' Flaherty 위원회 회원의 개인 의견; *Cenk Atasoy and Arda Sarkut v. Turkey*, 2012년 3월 29일 견해 채택(개인통보 1853/2008 및 1854/2008), UN Doc. CCPR/C/104/D/1853-1854/2008, Mr Gerald L. Neuman, Mr Yuji Iwasawa, Mr Michael O' Flaherty 및 Mr Walter Kälin 위원회 회원의 공동 개인의견; *김종남 외. v. 대한민국*, 2012년 10월 25일 위원회의 견해 채택 (개인통보 1786/2008), UN Doc. CCPR/C/106/D/1786/2008, Mr Michael O' Flaherty 위원회 회원의 개인의견, Mr Walter Kälin 위원회 회원의 개인 의견, Mr Gerald L. Neumann and Mr Yuji Iwasawa 위원회 회원의 개인 의견.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 신념을 표현하는 것에 기초해 있다고 말한 자유권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 22호에 담긴 입장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³⁸ 다른 이들은 인간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특별한 맥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유권 규약의 제18조와 함께 제6조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살인을 거부할 권리는 완전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³⁹

18. 어떤 구체적인 논리가 있건 간에, 자유권 위원회가 두 가지 요소, 즉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양심의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는 신념과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 신념을 표현하는 것에 근거해 해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의견 제출자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특별한 방안에 모색이 필요한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군대에 가게 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것과 같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자유권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⁴⁰

19. 이 질문들에 대해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자세하게 조사한 자유권 위원회 이외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파생된 것이다”⁴¹ 라는 내용의 결의안 24/17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수감해서는 안 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면제를 목표로 하는 조치를 취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병역 거부 사유에 적합한 적절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1989년 옛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조항들을 개선하고 다시 기재했습니다.⁴² 2013년 대한민국은 결의안 24/17이 투표 없이 채택되었을 때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1989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결의안을 투표 없이 채택했고, 1993년 대한민국이 위원회의 회원국이 된 후에 채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 2012년 대한민국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상호대화시간에 몇 개 국가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⁴³ 대부분 대한민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하며, 병역거부자 수감을 철폐

³⁸ 김중남 외. v. 대한민국, 2012년 10월 25일 위원회의 견해 채택 (개인통보 1786/2008), UN Doc. CCPR/C/106/D/1786/2008, 위원회 회원의 개인의견 Mr Walter Kälin.

³⁹ Cenk Atasoy and Arda Sarkut v. Turkey, 2012년 3월 29일 견해 채택, (개인통보 1853/2008 및 1854/2008), UN Doc. CCPR/C/104/D/1853-1854/2008, Sir Nigel Rodley, Mr Krister Thelin 및 Mr Cornelis Flinterman 위원회 회원의 공동 개인의견.

⁴⁰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 22호: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18조), UN Doc. CCPR/C/21/Rev.1/Add.4, 1993년 7월 30일, para. 8.

⁴¹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24/17 (A/HRC/24/17), 투표 없이 2013년 9월27일 채택, para. 1.

⁴² 옛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1989/59, 1993/84, 1995/83, 1998/77, 2002/45, 및 2004/35.

⁴³ 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은 국가가 주도하는 절차로, 유엔인권이사회 주최 하에 각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며 2006년 3월 유엔총회 결의안 60/251으로 탄생했다. 검토 대상국 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한다. 보고서에는 독립된 인권 전문가와 단체들 (특별보고관), 인권조약기구들, 그리고 다른 유엔단체들을 비롯한 국가인권기구, 비정부기구 (NGOs)등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제공한다. 검토는 검토 대상국과 유엔가입국 간의 상호토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토의 중에는 검토대상국에 대해 어느 가입국이나 질문, 코멘트, 권고를 할 수 있다.

하고 현재 수감되어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석방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⁴⁴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내세워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려우나 정부는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다른 권고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⁴⁵

지역적 기준, 해석, 관례

21.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유럽의 경우, 1983년부터 유럽의회 결의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으며,⁴⁶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호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2. 유럽평의회,⁴⁷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⁴⁸ 유럽평의회 의원총회(PACE)는⁴⁹ 모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 기준에 따른 법률 공포를 의무 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평의회 신규 가입국의 가입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⁵⁰

23. 2011년,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에 대한 자유권 위원회의 견해 이후 *바야탄 대 아르메니아*

⁴⁴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보고서, 대한민국, UN Doc. A/HRC/22/10, 2012년 12월 12일, para. 124.53.

⁴⁵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보고서, 대한민국, 부록: 검토에 대한 국가의 자원 참여 및 응답, 결론/권고에 대한 견해, UN Doc. A/HRC/22/10/Add.1, 2013년 1월 16일, para. 30.

⁴⁶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1983년 2월 7일 결의안(마치오치 결의안) (OJ C 068, 14/03/1983 P. 001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1989년 10월 13일 결의안(수미드바우어 결의안); 유럽의회 회원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1994년 1월 19일 결의안(반데라스, 모레트, 빈디 결의안);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유럽 사무국 참조, <http://www.ebco-beoc.org/eu>.

⁴⁷ 유럽 평의회는 47개 당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8개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다.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는 평의회의 결정 기구이며 모든 당사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료이사회는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감시하고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는 47개 당사국의 모든 국회 의원들과 80억 유럽 인구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에서 대표하는 유럽평의회의 47개 정부에 권고안을 만들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유럽평의회 의원총회는 결의안을 발표하고 유럽인권재판소 판사를 선출한다.

⁴⁸ 의무적 군복무에 대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R(87)8 (1987년 4월 9일) 및 무력단체 회원의 인권 CM/Rec(2010)4 (2010년 2월 24일)에 대한 권고.

⁴⁹ 결의안 337(1967) 및 권고 478 (1967), 816 (1977) 및 1518 (2001).

⁵⁰ 유럽평의회 의원총회: 유럽평의회 멤버십 요청에 관한 의견 193(1996); 의견 221(2000) 아르메니아의 유럽평의회 멤버십 신청; 의견 222 (2000), 아제르바이잔의 유럽평의회 멤버십 신청; 의견 234 (200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유럽평의회 멤버십 신청; 의견 239 (2002)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유럽평의회 멤버십 신청.

사건이 유럽인권재판소 항소심재판부에서 다루어 졌으며,⁵¹ 자유권 위원회와 동일한 견해가 채택되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군복무 수행과 한 사람의 양심 또는 깊고 진실된 종교적 또는 다른 믿음 사이에 심각하고 대처가 불가능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유럽협약 제9조에 따른 보호를 적용하기에 충분한 설득력과 진지성, 결합성, 중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믿음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유럽인권보호조약 조항의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된 차후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와 같은 입장을 적용했습니다.⁵²

2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해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은 없었으며, 2005년 미주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유일합니다.⁵³ 미주 인권위원회 결정⁵⁴ 역시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에 대한 자유권 위원회의 견해 발표에 앞선 것이며, 미주인권협약과 동등한 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 이전 판례법을 따랐습니다.⁵⁵ 그러나 같은 해, 미주인권재판소는 우호적 합의(friendly settlement)를 승인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발전하는 속성을 인식하고, 자유권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 22호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⁵⁶ 해당 사건에서 볼리비아 정부를 대표한 국방부는 이러한 취지의 법령이 없음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는 복무면제 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병역세를 징수하지 않고 병역완료서류를 발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무력분쟁 발생시 소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장관결의를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볼리비아는 “국방부와 군이 검토 중인 군법 개정안 초안에 국제인권법에 부합되도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포함” 시키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포함하는 군법 승인을 의회에 권고”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우호적 합의”의 조건이 미주인권협약에 부합되는지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주인권위원회는 우호적 합의 절차의 목적은 협약 상 인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며,⁵⁷ 해당 국가의 합의

⁵¹ *바야탄 대 아르메니아*(신청번호 23459/03), 2011년 7월 7일 항소심재판부 판결,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105611>.

⁵² *Ercep v. Turkey* (신청번호 43965/04), 2011년 11월 22일 판결 (프랑스어만 가능),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107532>; *Savda v. Turkey* (신청번호 42730/05), 2012년 6월 12일 판결 (프랑스어만 가능),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111414>; *Tarhan v. Turkey* (신청번호 9078/06) 2012년 7월 17일 (프랑스어만 가능),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112199>; *Buldu and Others v. Turkey* (신청번호 14017/08), 2014년 6월 3일 판결 (프랑스어만 가능),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144352>.

⁵³ *Cristián Daniel Sahli Vera et al. v. Chile*, 사건 12.219, 2005년 3월 10일 판결, 43/05.

⁵⁴ 미주인권협약(Pact of San José), 1144 UNTS 123, OASTS 36, 1969년 11월 22일 조인, 1978년 7월 18일 발효되었다.

⁵⁵ 미주인권협약 제12조 및 제6조 제3항(b)은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제8조 제3항 (c)(ii)와 비슷하다.

⁵⁶ *Alfredo Diaz Bustos v. Bolivia*, 접수번호 97/05, 2006년 10월 27일.

⁵⁷ 미주인권협약에 명시되어 있듯, 미주인권재판소의 주요 기능은 인권 존중 및 옹호 향상(제41조)이다. 재판소의 권한은 동 재판소에 제출된 탄원과 그 밖의 개인청원을 처리하는 일을 포함한다(제41조(f) 및 제44조). 이러한 탄원 등을 처리할 때, 이 절차는 미주인권협약이 인정한 인권 존중에 기반한 문제의 우호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견해로 당사국 임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포함한다(제48조(1)(f)).

수용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는 선의의 표현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⁵⁸

25. 청년의 권리에 대한 이베로-아메리칸 협약 제 1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의무 복무에 반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스페인, 우루과이가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처벌

26. 자유권 위원회는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과 차후의 개인청원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으며, 자유권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기소되고 유죄판결 받으며, 선고를 받은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권리를 침해 당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어떠한 특별한 대안도 제공하지 않는 의무적 군복무 제도의 결과라고 결론지었습니다.⁵⁹ 비슷하게,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이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⁶⁰ 2013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가장 최근에 채택한 결의안 (24/17)은 “당사국들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구금하고 반복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을 삼가 하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하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라는 명령을 재차 부과하는 방식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 원칙을 저버리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⁶¹

27.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반복적 처벌은 특히 자유권규약 일반 논평 제32호 제14조에 언급되어 있

⁵⁸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언급된 두 가지 절차가 모두 준수될 때까지 우호적 합의가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미주인권위원회는 당사국의 책임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의도임을 명시했다. 미주인권재판소 2013년 연례보고서, IACHR의 준수 상황에 대한 권고: 사건 12.475, 접수번호 97/05, Alfredo Díaz Bustos (볼리비아), paras 277–93, <http://www.oas.org/en/iachr/docs/annual/2013/docs-en/AnnualReport-Chap2-D.pdf>.

⁵⁹ 2006년 11월부터 자유권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개인통보 5건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으며, 이 중 4건이 대한민국과 관계된 것이다: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 2006년 11월 3일 견해 발표(개인통보 1321/2004, 1322/2004), UN Doc. CCPR/C/88/1321–1322/2004;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 대 대한민국*, 2010년 3월 23일(개인통보 1593 1603/2007)에 견해 발표, UN Doc. CCPR/C/98/D/1593–1603/2007;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2011년 3월 24일 견해 발표(개인통보 1642 1741/2007), UN Doc. CCPR/C/101/D/1642–1741/2007; *Cenk Atasoy and Arda Sarkut v. Turkey*, 2012년 3월 29일 견해 채택(개인통보 1853/2008 and 1854/2008), UN Doc. CCPR/C/104/D/1853–1854/2008;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2012년 10월 25일 견해 채택(개인통보 1786/2008), UN Doc. CCPR/C/106/D/1786/2008.

⁶⁰ 의견 8/2008 (콜롬비아) 2008년 5월 8일 채택, 의견 16/2008 (터키) 2008년 5월 9일 채택,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채택한 문서, UN Doc. A/HRC/10/21/Add.1, pp110–14 및 pp. 139 47, 각각;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10session/reports.htm>; 또한 실무그룹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 가능 <http://www.unwgadatabase.org/un>.

⁶¹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24/17 (A/HRC/24/17), 표결 없이 채택됨 2013년 9월 27일, para.10.

습니다.⁶²

“자유권규약 제14조 제7항은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해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정 행위에 관해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동일한 법원에서 받았거나 다른 사법기관이지만 동일한 행위일 경우 다시 재판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들 들어 민간재판소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람이 군사재판소 또는 특별재판소에서 같은 행위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이 재개되어 이에 불복종하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양심에 기반한 이유라면, 이는 같은 행위로 처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⁶³

국가 관행

28.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평화주의적 신념에 기초를 둔 특정 종교에 군복무를 면제한 경우는 지난 세기에 여러 사례가 있긴 했지만, 명문화된 법 조항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개인에게 군복무를 면제한 것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실상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국가들은 온전히 자원입대에 의존하고 있어서 징병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일부 국가가 평화시기에도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원칙을 계속 적용했고, 대신 민간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부록 2에서 보듯이 지난 50년 간 법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의 수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가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29.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징병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조항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징병제도는 뉴질랜드에서 1969년, 호주에서는 1939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시행되었습니다.

30. 특정 환경에서는 새롭게 부여된 징병에 대해 양심을 이유로 한 경우에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영국 병역법(1916년 1월 27일 제정) 조항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 캐나다와 미국이 유사한 법 조항을 채택했습니다. 병역거부 관련 조항 채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중 하나는 일부 군 장교들의 신념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반대하는 사람을 징집병 사이에 배치하면 군대의 사기와 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3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전쟁 시기만 아니라 평화 시기에도 징병제를 유지했던 일부 유럽 국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무기를 들지 않는 “대체 복무”를 부여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덴마크가 1917년 12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1922년, 핀란드가 1931년에 각각 무기를 들지 않는 대체복무를 각각 시행했습니다.

⁶² 제14조는 법원과 사법기관에서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⁶³ 자유권 위원회, 일반 논평 제32호, 제14조: 법원과 사법기관에서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UN Doc. CCPR/C/GC/32, 2007년 8월 23일, paras 54-5.

32. 1919년 1월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서명한 칙령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군복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이후 이 칙령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지만 이오시프 스탈린 아래서 적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소련의 예는 국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한 후에 그 정책을 뒤집은 유일한 경우다.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된 후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과거 소련에 속한 모든 공화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련한 입법, 또는 헌법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후에 언급될 것이다.)

33. 1940년 우루과이는 법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에서 면제했습니다. 우루과이는 유럽을 제외한 국가 중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에서 면제해, 법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국가의 수가 11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4. 2차 세계대전 후 패전한 열강은 군사주의를 추구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권장을 받았습니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Grundgesetz*) 제4조 제3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947년 일본 헌법 제9조는 일본이 군대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자위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긴 했지만, 자위대가 본래 자원입대의 성격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35. 1949년과 2006년 사이, 유엔 회원국 중 45개 국가가 (명시적으로든 아니면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간접적으로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 또는 헌법 조항을 공포해 모든 지역적 기구까지 다 포함을 하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57개에 달합니다(부록 2참고).

36. 유엔 회원국이 아닌 대만과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아브하즈 자치공화국(조지아), 트란스니스트리아(몰도바)의 사법권 아래서도 이러한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37. 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법제화하지 않은 국가의 헌법재판소들도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해왔습니다.

38. 예를 들어,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기존 법리를 뒤집고 2009년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⁶⁴ 병역법 제27조가 선주민과 장애인에게 병역을 완전히 면제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유사한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하지 않고 있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의 효력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럼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이행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것은 심각한 누락이라고 판결하고 이를 위해 법을 제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기본적인 속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징집에 임박해 있는 개인에 대한 권리는 “*tutela* (법률의 보호하에 있다)”에 의해서 이행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병역에 고유한 특정 활동이 입증되고 심각하며 실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2014년 초 현재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법 조항 초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Tutela*에 따라 군복무를 면

⁶⁴ *Comunicado No.43 - Expediente D7685 Sentencia C-728/09*, 2009년10월 14일 <http://www.corteconstitucional.gov.co/relatoria/2009/C-728-09.htm>.

제발게 되었습니다.⁶⁵

39. 2013년 10월 10일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TRNC) 헌법재판소는 군사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심판을 회부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무라트 카나틀리(Murat Kanatli)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습니다.⁶⁶ 헌법 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TRNC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입법기관이 대체 복무를 도입하는 법 또는 규제를 도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군복무 의무와 관계된 헌법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나 자유권 규약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복무를 할 의무와 개인의 양심 또는 깊이 진심으로 자리잡은 종교, 다른 믿음과 심각하게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등을 일으켜 군복무에 반대할 경우 이 두 협약에 보장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보장된 바에 따라 보호된다는 유럽인권재판소⁶⁷와 자유권 위원회의⁶⁸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40.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도 2013년 11월 19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병역법 조항이 헌법 제56조 제2항에 보장된 온전한 의미에서의 민간 대체 복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역제도가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에게 국방부의 특별계좌를 통해 금전적 기여를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또 대체복무를 군인이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대체복무를 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예비군에 편성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41. 한국을 제외하고는 2005년 이후 사실상 자원입대를 하게 되어 있는 칠레,⁶⁹ 그리고 터키의 최고법원만이⁷⁰ 최근 법리에서도 계속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권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습니다.⁷¹

⁶⁵ 가장 최근인 2014년 6월 17일, 대법원(Sala de Casacion) 판사(Magistrada) Sandra Patricia Salazar Cuéllar 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Mario Andrés Hurtado Cardozo 의 tutela 를 이행했다. Sandra Patricia Salazar Cuéllar 는 2개월 안에 Mario Andrés Hurtado Cardozo의 상황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Soacha 시에 군사지역 59를 명령했다.

⁶⁶ TRNC 헌법재판소, D2.2013, 사건번호. 13/2011, 2013년 10월10일 (“ TRNC헌법” 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 결정을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다고 해서 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견 제출자들이 사이프러스의 복부 또는 사실상 사이프러스의 행정관할에 대한 법률적 지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⁶⁷ TRNC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인용된 유럽인권재판소 사건은 2011년 7월 7일 *Bayatyan v. Armenia* (신청번호 23459/03)에 대한 유럽인권위원회 최종 재판소 판결, 2011년 11월 22일 *Erçep v. Turkey* (신청번호 43965/04) 판결, 특히 2012년 6월 12일 *Savda v. Turkey* (Application no. 42730/05) 판결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사건의 병역거부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⁶⁸ TRNC 법원의 판결은 또 2012년 3월 29일 채택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Cenk Atasoy and Arda Sarkut v. Turkey 사례를 인용하였다. (개인통보 1853/2008 and 1854/2008), UN Doc. CCPR/C/104/D/1853-1854/2008.

⁶⁹ 미주인권위원회 *Cristián Daniel Sahli Vera et al. v. Chile*, 사건 12.219, 2005년 3월 10일 결정, 보고서 번호 Report No. 43/05.

⁷⁰ 자유권 위원회, *Cenk Atasoy and Arda Sarkut v. Turkey*, 2012년 3월29일 위원회의 견해채택 (개인통보 1853/2008 및 1854/2008), UN Doc. CCPR/C/104/D/1853-1854/2008.

⁷¹ 유럽인권위원회가 *바이얀 대 아르메니아* (제23항 참고) 을 다루고 있을 당시에 아르메니아가 대체복무법을 도입했

42. 청년 권리에 대한 이베로-아메리칸 협정 당사국 중 4개국, 즉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해 국내법 또는 헌법으로 명시한 57개 국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1949년 군대를 폐지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인권이사회 결의안 24/17을 발의한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제19항). 온두라스도 동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온두라스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모두 자원입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조항 없이 징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청년권리에 대한 이베로-아메리칸 협정에서 관련 조항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헌법 재판소 판결은 양심의 자유를 언급하고 개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군 당국에 청원을 할 수는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⁷² 그리고 2년 후 미주인권위원회의 우호적 합의에서 볼리비아는 (아직 집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군사법제화를 승인하도록 촉진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제24항 참고).

43. 멕시코는 청년권리에 대한 이베로-아메리칸 협정에 서명을 한 후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양심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부담이 되지 않는 의무 군사훈련 요구에 대해 한 개인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할 경우 민간적인 대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⁷³ 그러나 실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허가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4.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제21항 참고),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중 2개국, 즉 아일랜드와 몰타는 헌법 혹은 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국가는 자원 입대 국가입니다. 아일랜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24/17을 공동 발의한 국가입니다(제19항 참고).

45.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 아일랜드만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 법제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자원입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니카라과, 파나마, 산 마리노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24/17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46. 끝으로 이스라엘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상 또는 국내법상 인정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 국방부는 이스라엘군 내부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소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을 면제해왔습니다.

47. 따라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법제화하거나 또는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부록2에 올라와 있는 유엔 57개 회원국에 12개국이 더해집니다.⁷⁴ 이들 12개 국가에서는 사법적으로 인정을 하거나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고 표현하는 국제적인 수단을 비준하는 방법을 통해,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촉구한 바에 따라, 또는 개념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사실상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

⁷² 볼리비아에 대한 3차 정례 보고와 관련해 채택할 관심사항에 대한 답변 참고(CCPR/C/BOL/3), 2013년 9월 23일, UN Doc. CCPR/C/BOL/Q3/Add.1, paras 226–8 (스페인어로만 가능).

⁷³ 멕시코의 5차 정례보고를 고려하여 채택할 관심사안에 대한 답변 참고(CCPR/C/MEX/5), 2010년 1월 18일, UN Doc. CCPR/C/MEX/Q5/Add.1 para. 233 (스페인어로만 가능).

⁷⁴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몰타,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산 마리노

48. 따라서 총 69개 국가라는 수가 193개 유엔 회원국들 중의 소수를 대표하는데 불과할 수 있지만 병역 거부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중 21개국은 군대가 없으며,⁷⁵ 67개국은 전체가 자원입대제도를 선택하고 있어,⁷⁶ 의무군입대에 대한 병역거부를 문제삼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88개국입니다.

49. 여전히 의무 군복무를 채택하고 있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36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대다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부록 3참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군복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사실상 체계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페루의 경우 예를 들자면 칠레와 마찬가지로 징병 관련 조항이 현재는 예비용도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군대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자원 입대한 사람들이 더 적은 특정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조항이 없는 곳에서는 굳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일부의 경우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탄압의 수준이 군입대요건과 관련해서 촘촘하게 기록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리아와 이란을 도망쳐 나온 이들 중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끔찍한 이들도 있지만, 자국 내에서 군복무 거부를 시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나머지 36개국 중 에리트레아, 한국, 싱가포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만이 2013년에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들을 수감했습니다.

50. 제28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에서 면제하는 것은 전쟁 시 징병제라는 맥락에서 처음 시행되긴 했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조항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현재 무력 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 국과 정치적 긴장관계에 있어서 주요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두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관계를 가진 상대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법 조항이 없는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대만은 대체복무법을 2000년 1월 15일에 시행했으며 2013년 6월 8일 아르메니아는 군의 통제에서 벗어난 온전한 의미에서의 민간대체제도를 설립하는 법적인 개정안을 도입했습니다.

결론

51. 본 의견서를 제출하는 의견 제출자들은 한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 믿음에 반하는 군복무를 강제로 수행하게 하거나 군복무를 거부하는 개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사상, 양심,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제출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 또는 신념, 믿음을 이유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방안 없는 의무 군복무제도는 국제 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 의견서가 기초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 및 여타 국제인권기구 및 메커니즘의 논평

⁷⁵ 안도라, 도미니카, 그레나다, 아이티, 아이슬란드, 키리바시, 리히텐슈타인, 몰디브, 모리셔스, 마이크로네시아, 모나코, 나우루, 팔라우, 솔로몬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⁷⁶ 아프가니스탄, 안티구아바부아,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바도스, 벨리즈, 부탄, 보츠나와, 브루나이,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감비아, 가나, 기아나, 인도,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니제르, 오만,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카타르,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스리랑카, 수리남, 스와질랜드, 동티모르,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및 해석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며, 영향을 받고 있는 다수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는 데도 반영이 되어왔습니다.

부록 1. 의견 제출자에 관한 설명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150개 국가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다른 인권기준을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한 캠페인을 300만명 이상의 지지자, 회원 그리고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전세계적인 운동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의 국제인권법, 국제인도주의 법과 기준들, 이들의 실행상황을 감시합니다. 주요 임무로는 조사와 행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완전함, 표현과 양심의 자유, 차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거나 방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로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을 불편부당성의 원칙에서 보호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권리를 보호받기 원하는 이들의 시선으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정부, 정치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종교와도 독립적이며, 대부분 회원들과 지지자들의 기금으로 운영되어 재정적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특별협의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국제 운동은 각국의 회원조직(한국을 포함)과 국제사무국(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번호는 606776으로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는 전 세계의 퀘이커 교도들(the Religious Society of Friends)과 연결된 단체입니다. 위원회는 1937년에 설립되었고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1948년부터 유엔경제이사회에서 국제비정부기구로서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일반협의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설립된 1945년부터 퀘이커는 단체의 목적을 공유하고 전쟁폐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책, 인권, 경제정의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제네바와 뉴욕에 있는 퀘이커 유엔사무소에서 유엔관련업무들을 하고 있으며 매년 비엔나의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합니다.

국제법률가위원회

세계 각 지역 60명의 저명한 판사들과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제법률가위원회(ICJ)는 법치를 통해 특별한 법률지식으로 국내, 국제 사법제도를 개발하고 강화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합니다. 1952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제네바에 있고 5개 대륙에서 활동하며 60개가 넘는 각국의 지부들과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ICJ는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 삼권분립의 원칙 보호, 사법부와 법조계의 독립 보장을 포함한 국제인권과 국제인도주의법의 점진적인 발달과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CJ는 유엔경제이사회, UNESCO에서 자문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회 참가자격,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참관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주기구와 국제의원연맹의 다양한 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화해단체

국제화해단체는 1919년에 설립된 국제비정부기구로 유럽과 북미지역에 있는 제1차 세계대전 전날 독일 남부 콘스탄스에서 열렸던 기독교 평화주의 컨퍼런스의 결과로 생겨난 화해협회(Fellowships of Reconciliation)의 상급단체입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50개국 이상의 단체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가 전쟁과 전쟁준비에 반대하기 위해 연합했습니다. 또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제화해단체는 1979년부터 유엔경제이사회의 특별자문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화해단체는 초기활동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해왔으며 최근에는 유엔인권의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절차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자유권 위원회에 군복무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된 정기적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국제비정부기구로 40개국에 80개 이상의 산하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1921년 설립 때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다른 산하단체들이 주목해 온 것이기도 합니다. 유엔에서도 유엔인권위원회에 중점을 두며 일해왔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사례를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전세계적, 지역적 연구를 1967년, 1990년, 1998년, 2008년에 발표했으며 2013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상호작용 온라인 국제인권제도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산하단체들을 비롯한 다른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담고 있습니다.

부록 2. 최초 법률 또는 헌법에서 인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아래의 표는 유엔 회원국에 해당하는 국가의 법률 또는 헌법에서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도가 명시되어 있는 날짜이다.

1903	Australia	Defence Act
1912	New Zealand	Defence Amendment Act, Article 65.2
1916	United Kingdom	Military Service Act, 27 Jan.
1917	Canada	act introducing conscrip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Act of 18 May
	Denmark	Alternative Service Act, 13 Dec.
1920	Sweden	Alternative Service Schemes Act, 21 May
1922	Netherlands	Constitutional amendment
	Norway	Civilian Conscript Workers Act, 24 March
1931	Finland	Alternative Service Act, 4 June
1940	Uruguay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4.1
1949	Germany	Grundgesetz (“Basic Law”)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rticle 4.3 (the first provisions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dated from 1964)
1955	Austria	National Service Act
1963	France	Act No. 1255/63, 21 December
	Luxembourg	Act of 23 July, Article 8
1964	Belgium	Act of 3 June
1972	Italy	Act No. 772/1972
1976	Portugal	Constitution, Article 41
1978	Spain	Constitution
1988	Brazil	Constitution, Article 143.1
	Marshall Islands	Constitution, Article 11
	Poland	Constitution, Article 85
1989	Hungary	Constitution, Article 70
1990	Croatia	Constitution, Article 47.2
	Latvia	Law on Substitute Service (of the Lat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Lithuania	Law on Alternative Service (of the Lithua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1991	Bulgaria	Constitution, Article 59.2
	Czechoslovakia (now the	Civilian Service Act, No.18/1992

	Czech Republic and Slovakia)	
	Estonia	Constitution, Article 124
	Moldova	Alternative Service Act, No. 633/91
1992	Cape Verde	Constitution, Article 271
	Cyprus	National Guard Act, No. 2/1992, 9 January
	Georgia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2
	Paraguay	Constitution, Article 129
	Slovenia	Constitution
	Uzbekistan	Universal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52
1993	Angola	Act No. 1/93, Article 10
	Russian Federation	Constitution, Article 59.3
1994	Belarus	Constitution, Article 57
	Kyrgyzstan	Alternative (Non-military) Service Act
1995	Argentina	Act 24429/95, 5 January, Article 20
	Azerbaijan	Constitution, Article 76
1996	Bosnia-Herzegovina	parallel Defence Acts in the Federation and in the Republika Srpska
	Romania	Act No. 46/1996, Article 4
	Switzerland	Civilian Service Act
	Ukraine	Constitution, Article 35.3
1997	Greece	Act No. 2510/97.
	Mozambique	Obligatory Military Service Act
1998	Albania	Constitution, Article 166
	Ecuador	Constitution, Article 161
2001	The FYR of Macedonia	Defence Act, Article 8
2002	Mongolia	Act "On Military Service Duties of Citizens and on the Legal Status of Military Personnel"
2003	Armenia	Alternative Service Act
	Guatemala	National Civic Service Act, No. 20/2003
	Serbia and Montenegro (Montenegro gained independence in 2006)	Constitution, Article 58

부록 3. 징병제도가 있으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

	보통 군복무 기간(개월)	군대에서 징집병 비율(파악된 부분)	연간 대략적인 “징집 가능한 병력(conscript pool)” (1994 년생 남성인구)	전체병력 (“징집 가능한 병력” 백분율로 표현)	징집병 수	2000 년 이후 기록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Algeria	18	57.7	342,895	37.9	21.9	1
Benin	18		108,496	6.4		-
Chile	12	19.2	141,500	43.4	8.3	-
China	24	36.5	10,406,544	22	8	-
Cuba	24		72,823	67.3		-
DPR Korea	60		207,737	572.8		-
Egypt	12	68.4	738,405	56	38.3	1
Eritrea	16		66,829	301.9		16
Eq. Guinea	24		1,320	17.8		-
Guinea	24		118,443	8.2		-
Guinea-Bissau	24		17,639	25.2		-
Iran	24	42	715,111	73.1	30.8	-
Kazakhstan	12		125,332	31.1		-
Madagascar	18		248,184	5.4		-
Mali	24		158,031	4.7		-
Morocco	18	51	300,327	65.2	33.3	-
Rep. of Korea	21		365,760	179.1		10,000 (approx.)
Senegal	24		145,509	9.3		-
Singapore	24	58.6	27,098	267.5	156.8	52
Sudan	24		532	45.9		-
Syria	30		256,698	69.3		-
Tajikistan	24		76,430	21.3		-
Thailand	24	39	533,424	70.4	26.4	-
Togo	24		74,036	11.5		-
Tunisia	12	70.4	90,436	72.9	51.3	-
Turkey	15	70.4	700,079	72.9	51.4	13
Turkmenistan	24		53,829	40.9		37
Venezuela	30	2.8	277,210	41.5	1.2	-
Vietnam	24		847,743	56.9		-
Yemen	24		287,141	23.2		-

상투메프린시페는 병역의무 조항이 있으나, 세부사항을 알 수 없다. 중앙정보국 국가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군대가 “소규모” 라고 표현되어 있다.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인도네시아, 마우리타니아, 페루의 경우 징병에 대한 법적 조항이 있으나, 최근 이행되지 않았다. 5 개국 모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기록이 없다.

주석

주요 정보

국제전략연구소, 2014년 군사력 보고서(*The Military Balance 2014*), (Routledge, London, 2014년 2월).

중앙정보국, 미국, 중앙정보국 국가통계자료(*CIA World Factbook*), www.cia.gov, 2014년 8월 자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런던, 전세계 징병제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설문, www.wri-irg.org/co/rtba/index.html, 2014년 8월 참고.

Forum 18 News Service archives (www.forum18.org)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한 여호와의 증인(2003년/2005년) 의견서

병역의무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병역의무 기간은 어떠한 축소(예, 교육 이수증 반영)도 있기 전의 의무를 의미한다. 몇몇 사례에서 징병제는 간헐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이행될 뿐이며, 그러므로 중앙정보국이 측정한 연간 16세가 되는 남성의 수(2010년 이후)를 포함한 ‘징집 가능한 병력’ 일부만이 징집병 수를 의미한다. 에리트레아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징병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각국의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수는 최소 수치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최초 징집을 거부한 신원확인이 가능한 개인 중 구금된 명백한 사례만을 반영했다. 각각 다른 시기에 수감된 전체 수를 인용할 때에는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 굉장한 주의를 가지고 측정했다. 때때로 구금은 강제징집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징집이 된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개인과 징역을 선고 받지 않았거나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개인도 포함되지 않았다.

에리트레아. 2000년부터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포함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평화수감자” 데이터베이스(<http://wri-irg.org/node/4718>)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되어 있는 개인의 수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증인 신도들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수감된 사람은 17,840명이다. 2004년 2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해 누적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10,000명 정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동안 수감된 2,719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는 약 7,500명보다 적은 수가 수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수만 볼 때에 2000년부터 10,000명을 초과한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숫자가 대다수이지만 2004년 의견서에서 “제 7 일안식일예수재림교와 다른 공동체”의 몇 안 되는 병역거부자를 가리키기도 했다. 2000년부터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17개의 개인 청원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 7 일안식일예수재림교도가 아닌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싱가포르. 여호와의 증인은 2002년 말을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26명이 수감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2007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최소 8명이 수감; Fautré, W. (ed.), *종교나 믿음의 자유와 신성모독: 수감자 목록: 2013년 전 세계 보고서(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d Blasphemy: Prisoners List: World Report 2013)* (국경 없는 인권회, 브뤼셀, 2013년 12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8명이 현재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와있지 않다.